

1. 住宅分譲價 原價運動制 施行指針

建設部 1990.5.23 施行

第1條 (住宅分譲價 原價運動制의 定義)

住宅分譲價 原價運動制 (以下 原價運動制라 한다) 라 함은 住宅分譲價格을 宅地費와 建築費 (適正利潤包含)에 連動 시켜 決定하는 制度를 말한다.

第2條 (適用範圍) ①原價運動制의 適用

을 받는 對象住宅은 住宅建設促進法 第 33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住宅建設業 計劃承認을 받아 一般에게 分譲되는 住宅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.

다만, 住宅分譲價格이 '89.11.9. 以前 的 行政指導價格 (25.7坪超過坪當134 萬원, 25.7坪以下 126.7 萬원) 以下인 境遇에는 適用을 받지 아니한다.

1. 民間住宅事業者가 建設, 供給하는 住宅

2. 住宅組合 (住宅再建築組合, 住宅再開發組合을 包含한다) 이 一般에게 分譲하는 住宅 (地方自治團體, 大韓住宅公社, 韓國土地開發公社가 施行하는 境遇를 包含한다.)

②原價運動制의 適用을 받는 對象地域

은 서울, 釜山, 光州, 大田地域으
로 하되, 其他地域은 該當 地方自治團
體의 長이 判斷하여 原價運動制 適用與
否를 決定할 수 있다.

第3條 (建築費上限價格) ①建築費上限 價格은 建設部長官이 定한다.

②建築費上限價格은 別表와 같다.

第4條 (宅地費 算定) ①住宅分譲價格中 宅地費는 다음 各號의 1의 價格으로 한다.

1. 國家, 地方自治團體와 韓國土地開
發公社, 大韓住宅公社 등 公共機關이
住宅開發促進法, 住宅建設促進法, 都
市計劃法 및 其他法律에 의하여 開發,
供給하는 宅地의 境遇에는 그 供給
價格

2. 住宅事業者가 上記以外의 方法으로
取得 또는 保有하고 있는 宅地 (以下
“事業者保有宅地”라 한다)의 境遇
에는 鑑定評價價格 (住宅組合이 一般
에게 分譲하는 住宅의 境遇에는 管理
處分計劃樹立을 위한 評價價格)

②第 1 項第 1 號의 規定에 의한 供給價

格에는 다음 각號에 該當하는 費用을 加算할 수 있다.

1. 宅地를 供給받기 위하여 先受金, 中途金등 宅地費의 一部 또는 全部를 先納한 境遇에는 宅地引渡日(宅地引渡日以前에 入住者募集公告를 한 境遇에는 住宅事業計劃承認日) 까지의 先納代金에 대한 期間利子

2. 諸稅公課金

3. 登記手數料등 必要的 經費

③第2項第1號의 期間利子는 年利 11.5%로 算定하되, 日割計算한다.

第5條 (事業者保有宅地의 鑑定評價業者選定) ①住宅事業者は 住宅事業計劃承認申請時に 事業計劃承認權者에게 宅地價格의 鑑定評價를 要請하고 鑑定評價에 必要한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.
②事業計劃承認權者は 韓國鑑定院과 鑑定評價業者 1人에게 宅地價格의 鑑定評價를 依頼하여야 한다.
③選定된 鑑定評價業者は 宅地價格의 鑑定評價에 앞서公正한 評價를 誓約하는 內容의 誓約書를 事業計劃承認權者에게 提出하여야 한다.

第6條 (事業者保有宅地의 鑑定評價基準 및 方法) ①事業者保有宅地는 事業計劃承認申請時點을 基準으로 하여 評價하며 入住者募集公告 承認申請以前까지 完了하여야 한다.
②鑑定評價는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하

여 評價함을 原則으로 하되, 公示地價가 確定告示되지 않은 境遇에는 基準地價를 基準으로 하여 評價하여야 한다.

③素地狀態인 土地는 宅地造成이 完了된 狀態를前提로 하고 地目은 垂地를 基準으로 評價한다.

④鑑定評價額은 韓國鑑定院과 鑑定評價業者가 評價한 宅地價格을 算術平均하여 定하며, 入住者募集公告時에 評價된 宅地價格과 擔當鑑定評價業者の 名單을 公開하여야 한다.

第7條 (事業者保有宅地의 宅地費加算項目)

①住宅事業者가 宅地費에 追加로 加算받고자 하는 項目이 있을 境遇에는 第5條第1項의 鑑定評價 資料提出時에 이를 證明할 수 있는 資料를 添附하여 事業計劃承認權者에게 要請할 수 있다.
②事業計劃承認權者は 第1項의 追加加算 要請項目에 대하여 鑑定評價가 可能한 項目은 宅地價格의 鑑定評價에 包含하여 鑑定評價하고 鑑定評價가 困難한 項目은 查定하여 宅地費에 算入할 수 있다.

③第1項의 規定에 依據하여 宅地費로 加算할 수 있는 項目은 다음 各號와 같다.

1. 住宅建設促進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者가 負擔하도록 되어 있는 幹線施設의 設置費用
2. 進入道路開設에 編入되는 私有地의 鑑定評價價格

- 3. 支障物 撤去費用
- 4. 軟弱地盤의 補強工事費
- 5. 鑑定評價手數料

第8條 (事業者保有宅地의 再評價) ①韓國鑑定院과 鑑定評價業者が 評價한 宅地價格의 差異가 30%以上인 境遇에는 1回에 限하여 再評價할 수 있다. 이 境遇 再評價結果를 算術平均한 價格을 評價價格으로 한다.

②住宅事業者が 評價結果에 대하여 異議가 있을 境遇에는 1回에 限하여 再評價를 要請할 수 있으며 이 境遇 再評價結果를 算術平均한 價格을 評價價格으로 한다.

③第1項 및 第2項에 의하여 再評價할 境遇에는 韓國鑑定院과 鑑定評價業者 1人에게 鑑定評價를 依賴하여야 한다. 이 境遇 最初의 鑑定評價業者에게 鑑定評價를 依賴할 수 없다.

④住宅事業者が 再評價結果에 대하여 不服하는 境遇에는 事業計劃承認申請을 撤回할 수 있다.

第9條 (鑑定評價 費用負擔) ①宅地價格의 鑑定評價에 所要되는 手數料는 住宅事業者が 負擔하여야 한다.

②事業計劃承認權者は 推定鑑定評價手數料의 2倍에相當하는 金額을 住宅事業者が 住宅銀行에 預置하게 하고 鑑定評價完了後 韓國鑑定院의 鑑定評價報酬基準에 따라 精算하도록 하여야 한다.

第10條 (仕様選擇制度) ①住宅事業者は 專用面積 $60 m^2$ (18坪)을 超過하는 住宅에 限하여 基本仕樣品目에 代替할 수 있는 仕樣選擇品目을 提示하여 入住者가 一部 또는 全部를 選擇하게 할 수 있다.

②入住者가 負擔하는 仕樣選擇에 대한 追加費用은 建築費의 7%以內로 한다.

③第2項의 仕樣選擇에 대한 追加費用의 算出基準이 되는 建築費는 15層以下의 建築費로 하되, 그 上限價格을 超過할 수 없다.

第11條 (補則) 住宅事業者は 入住者の 選好度에 따라坪型別, 層別, 住宅別 分讓價格을 分讓總額範圍內에서 調整하여 差을 둘 수 있다.

〈附 則〉

1. 이 指針은 '90年5月23日부터 施行한다.
2. 이 指針施行과 同時に '89年11月10日 住宅分讓價 原價運動制 細部施行方案('89.11.7. 建設部 住政 30417-25926)과 建設部告示 第656號 ('89.11.10)는 廢止한다.
3. 이 指針은 이 指針 施行日以後 入住者募集公告 承認申請書가 接受되는 事業부터 適用한다.

〈別表〉

建築費 上限價格

單位：萬원 / 3.3 m^2 (坪)

區 分	層 別	建築費 上限價格 (分譲面積에 適用)
專用面積 85 m^2 (25.7坪) 以下	15 層以下 16 層以上	113 127
專用面積 85 m^2 (25.7平) 超過	15 層以下 16 層以上	116 130

주택 정보



정기구독

- 주택정보의 정기구독 기간은 1년입니다.
- 주택정보의 1년 정기구독료는 35,000원입니다.
- 주택정보 정기구독을 신청하려면
①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지로용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지로카드에 지로번호, 받으실분의 성명, 주소,
전화번호, 구독기간을 명확히 기입해 주십시오.
지로번호 : 7516377
- ②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우편대체구좌를
이용하셔도 됩니다.
우편대체구좌 : 012930-31-2636892
- ③ 우편소액환을 이용하셔도 됩니다.
- 정기구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
547-1835, 546-4902